

	<b>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</b>	규정번호		KTC-05-04	
		제정일자		2003. 8. 1.	
		개정일자		2023. 2. 27.	
		개정번호	Ver.3.01	총페이지	4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한국관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외국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에서 외국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교와 교류협정을 맺고 학생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교류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을 칭한다.

**제3조(파견 및 교환목적)** 해외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을 유학시키는 목적은 교류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에게 유학 기회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.

**제4조(관장)** ①교류대학 파견 및 교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국제교류원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 8. 1.>

②본 대학교에서 파견 및 교환학생의 관리를 위해 외국대학에 유학생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. 단 자격, 역할, 보수 등 유학생지도에 대한 일반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지원 자격)**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
2. 본 대학교에서 이수한 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학생(4.50 기준)
3. 해당대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 자
4. 기타 총장이 정한 자격을 충족한 자
5. 재외국민 외국인전형 입학자 제외

**제6조(신청절차)** 교류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,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국제교류원에 제출한다. <개정 2022. 8. 1.>

**제7조(제출서류)**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응모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파견 및 교환학생 응모지원서(소정양식) 1부
2. 성적증명서 1부
3. 재학증명서 1부
4. 서약서 1부

**제8조(선발)**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학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한다.

**제8조의 2(선발절차 및 기준)**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, 면접은 국제교류원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2. 8. 1.>

1. 해당국가 외국어 시험을 통하여 일정한 성적에 도달한 학생을 선발한다.
2. 면접을 통하여 파견 및 교환학생을 선발한다.

**제9조(유학기간)** 파견 및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를 원칙으로 하며,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총장이 허가한 경우, 2학년 2학기 유학도 인정한다. <개정 2022. 8. 1.>

**제10조(장학혜택)**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본 대학교와 해당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라 장학혜택이 부여된다. 그 범위는 장학규정에 따른다.

**제11조(재학기간 및 등록)** ①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본 대학교 재학기간으로 본다.  
② 파견 및 교환학생은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 
③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대학교의 등록을 필해야 한다.

**제12조(교과과정 이수)**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교와 교류대학간의 협의하여 개설한 교과과정
2. 소속 전공분야 혹은 유사전공분야 교과과정

**제13조(학점인정)** 파견 및 교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본 대학교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1. 학칙 제35조 1항에 근거하여 20학점까지 인정한다. <개정 2022. 8. 1.>
2. 성적기록부에는 P/F로 표기한다.

3.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(과목)을 해당학기 이수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. <개정 2023. 2. 27.>

**제14조(준수사항)**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2.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서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3. 파견 및 교환학생은 교류대학에서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 한다. 단, 귀국연장 시 해당 학생은 귀국연기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4. 해외 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그 가족이 책임을 진다.
5. 교류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하고 지불한 장학금을 회수한다.
6. 파견 및 교환학생은 교류대학 및 본 대학교에서 지정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
7. 파견 및 교환학생은 본 대학교 및 파견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.
8. 해외 파견 및 교환학생 서약서를 작성하며 성실히 이를 준수한다.

**제15조(학과 파견제도 시행조건)** 학과 파견제도에 참여하는 학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해외 교류대학에 유학하는 기간동안 본 대학교의 해당학과는 대상학년 및 학기의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다.
2. 학생 개인사정으로 유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동일계열의 전공 및 자유선택 과목을 이수 할 수 있다.

**제16조(징계)** 학생징계는 학생이 우리대학 및 파견기관의 규정, 유학생 서약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 퇴원 및 즉시 귀국조치 한다. 또한 학생 상벌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
**제17조(기타)**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6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본 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본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본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